

# 폭력 생존자 및 피해자 가족의 휴가 및 편의 제공 권리용

## 공지사항



Civil Rights  
Department  
STATE OF CALIFORNIA

유의 사항: 고용주는 고용 시, 매년, 요청 시 그리고 고용주에게 폭력 피해자 또는 폭력 피해자의 가족임을 알리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정 폭력, 성폭력, 스토킹, 폭력적인 위협, 위험한 무기를 사용한 행위 또는 위험한 무기 소지와 관련된 행위, 또는 부상을 유발하는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폭력 피해자에 해당됩니다.

## 휴가를 사용할 권리

- 배심원 의무 또는 소환장이나 법원 명령을 준수할 목적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하기 위해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직원은 고용주의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권리를 갖습니다.
- 폭력 피해자인 경우, 본인 혹은 자녀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 보호 목적으로 구제 조치(예: 접근 금지 명령)를 받기 위해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직원은 고용주의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권리를 갖습니다.
- 귀하가 폭력 피해자 혹은 폭력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이며 고용주의 직원이 25명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 본인 혹은 가족 구성원을 향후에 일어날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목적의 안전 계획 또는 기타 조치에 참여하기 위함
  - 폭력과 관련된 법원 심리와 같은 민사, 행정 또는 형사 소송 절차 준비, 참여 또는 참석하기 위함
  - 폭력 행위가 일어난 후 아동 또는 성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을 찾거나 등록하고 또는 제공하거나 부양받는 성인을 돌보기 위함
  - 폭력으로 인한 부상에서 회복 중인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함
  - 폭력과 관련하여 다음 서비스를 받거나 가족 구성원이 받도록 돕기 위함: 민사 또는 형사 법률 서비스; 접근 금지 명령 또는 기타 구제; 부상에 대한 의료 서비스; 가정 폭력 쉼터 또는 프로그램, 강간 위기 센터, 피해자 지원 단체 또는 기관의 서비스; 심리 상담; 정신 건강 서비스; 또는 주거(

이주, 임시 주거지 또는 영구 주거지 확보, 새로운 학교 또는 보육 시설에 자녀를 등록하는 것을 포함)

- 폭력 피해자이거나 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인 경우, 해당 사유로 최대 12 주까지 휴직할 수 있습니다. 생존한 폭력 피해자의 가족이며 본인이 피해자가 아닌 경우, 해당 사유로 최대 10일까지 휴직할 수 있습니다. 단, 이주를 하는 경우, 최대 5일까지 휴직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 공지에 명시된 사유로 휴가, 유급 휴가, 개인 휴가 또는 유급 병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고용주에게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단,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전 통지가 없더라도, 결근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합리적 기간 내에 고용주에게 제출하면 고용주는 귀하에게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 비밀 유지 권리

-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인 경우, 고용주는 연방법 또는 주법상 정보 공개가 요구되거나 직장 내 안전을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휴가 또는 합리적인 편의 제공 요청에 대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귀하 또는 귀하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 있는 경우, 고용주는 사전에 귀하에게 알려야 합니다.

# 폭력 생존자 및 피해자 가족의 휴가 및 편의 제공 권리용

## 공지사항



Civil Rights  
Department  
STATE OF CALIFORNIA

## 안전을 위하여 합리적 편의 제공을 받을 권리

- 귀하 혹은 귀하의 가족이 폭력 피해자인 경우, 직장에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합리적 편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귀하와 협력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귀하의 요청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으로 자격과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는 진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복 및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귀하를 징계하거나, 차별 대우하거나, 해고할 수 없습니다.

- 귀하가 생존자 혹은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이거나 가정 폭력, 성폭력, 스토킹, 폭력의 위협 또는 폭력을 당해 부상당한 생존자인 경우.
- 폭력과 관련하여 회복과 관련된 도움을 받기 위해 휴가를 요청한 경우.
- 직장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를 요청한 경우.

## 기타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임금 대체:**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거나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임금 대체를 받을 자격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 장애 보험(SDI)**을 통해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단기 임금 대체를 제공받습니다. **유급 가족 휴가(PFL)**를 통해 중병에 걸린 가족 구성원을 돌볼 수 있도록 단기 임금 대체를 제공받습니다. 임금 대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거나 청구를 접수하려면 고용 개발부(EDD) 온라인(<https://edd.ca.gov/>) 또는 800-480-3287(SDI) 또는 877-238-4373(PFL)으로 전화하십시오.
- **가족 및 의료 휴가:** 캘리포니아 가족권리법(California Family Rights Act) 하에 귀하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심각한 건강 문제, 또는 자녀의

출산, 입양 또는 위탁 양육의 사유로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 및 의료 휴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it.ly/CRD-leave](http://bit.ly/CRD-leave)를 방문하세요.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생각되면 CRD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장례 휴가:**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해당 직원의 가족 구성원 사망 이후 3개월 이내에 최대 5일까지 장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휴가는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례 휴가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it.ly/CRD-Bereavement](http://bit.ly/CRD-Bereavement)를 방문하세요.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생각되면 CRD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특정 범죄로 인한 법정 출두 휴가:** 특정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특정 범죄 피해자의 가족인 경우, 노동법 230.2조 및 230.5조에 따라 관련 법원 절차에 참석하기 위해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bit.ly/DIR-Retaliation](http://bit.ly/DIR-Retaliation)을 방문하면 산업 관계부 산하 노동위원회(Labor Commissioner's Office within the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거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민원 제기

권리에 관한 질문이 있거나 민원을 제기하려면 시민권부에 문의하십시오.

### Civil Rights Department

온라인 주소: <http://ccrs.calcivilrights.ca.gov/s/>

우편 주소: 651 Bannon Street, Suite 200,  
Sacramento, CA 95811

유선 전화: 800-884-1684(음성),  
800-700-2320(TTY), 또는 캘리포니아 릴레이 서비스(711).